

나주이창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05.22]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714-1번지 행복주택 150호

-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금번 완화모집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고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5.22)가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연령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순 위	입주자격완화 내용		
1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가구원수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맞벌이부부 제외)		1인
			2인
			3인 이상
	맞벌이 신혼부부		2인 이상
			3인 이상
			일반조건
			120% 이하
			110% 이하
			10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2순위	■ 기간요건		
	공급대상		일반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완화조건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맞벌이부부 제외)		1인
			2인
			3인 이상
	맞벌이 신혼부부		2인 이상
			3인 이상
			14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140% 이하
			13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완화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3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가구원수	완화조건
	전체	1인	150% 이하
		2인	
		3인 이상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2에 의거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되, 일반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공급계층	신청자격
①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나주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 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나주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②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③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5.05.23~2006.05.2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자격완화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④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자격완화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자격완화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자격완화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⑤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1960.05.22.이전(포함) 출생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자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인터넷(PC)/ 모바일 접수 '25.06.02(화) 10:00 ~06.10(화) 16:00 * 현장접수 '25.06.05(목) (10:00~15:30) (점심시간 12시 ~13시 제외)	2025.06.12(목) 16: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등기우편제출 '2025.06.17(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사 (2~3개월 소요)	2025.09.25(목) 16: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ARS(1661-7700)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대기 예비자	금회 모집 예비자 수	세대 당 계약면적(m²)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21	산업단지근로자	54	1	50	21.77	11.224	3.7095	0	36.7035	10	철근 콘크리트 · 벽식구조 · 개별난방	'22.9월
	대학생·청년				21.77	11.224	3.7095	0	36.7035	10		
26A	산업단지근로자	8	3	5	26.80	13.8174	4.5666	0	45.1840	10		
	청년				26.80	13.8174	4.5666	0	45.1840	10		
	고령자				26.80	13.8174	4.5666	0	45.1840	20		
36A	산업단지근로자	30	8	20	36.54	18.8391	6.2264	0	61.6055	10		
	청년				36.54	18.8391	6.2264	0	61.6055	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6.54	18.8391	6.2264	0	61.6055	10~14		
	고령자				36.54	18.8391	6.2264	0	61.6055	20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21	산업단지근로자	14,760,000	738,000	14,022,000	95,940	(+) 6,000	20,760	60,940
						(-) 11,000	3,760	128,020
	대학생	12,546,000	627,000	11,919,000	81,540	(+) 3,000	15,546	64,040
						(-) 9,000	3,546	107,790
	청년(소득無)	12,546,000	627,000	11,919,000	81,540	(+) 3,000	15,546	64,040
						(-) 9,000	3,546	107,790
	청년(소득有)	13,284,000	664,000	12,620,000	86,340	(+) 4,000	17,284	63,000
						(-) 10,000	3,284	115,500
26A	산업단지근로자	16,960,000	848,000	16,112,000	110,240	(+) 8,000	24,960	63,570
						(-) 13,000	3,960	148,150
	청년(소득無)	14,416,000	721,000	13,695,000	93,700	(+) 5,000	19,416	64,530
						(-) 11,000	3,416	125,780
	청년(소득有)	15,264,000	763,000	14,501,000	99,210	(+) 6,000	21,264	64,210
						(-) 12,000	3,264	134,210
	고령자	16,112,000	805,000	15,307,000	104,720	(+) 7,000	23,112	63,880
						(-) 12,000	4,112	139,720
36A	산업단지근로자	23,400,000	1,170,000	22,230,000	152,100	(+) 15,000	38,400	64,600
						(-) 18,000	5,400	204,600
	청년(소득無)	19,890,000	994,000	18,896,000	129,280	(+) 11,000	30,890	65,110
						(-) 15,000	4,890	173,030
	청년(소득有)	21,060,000	1,053,000	20,007,000	136,890	(+) 13,000	34,060	61,050
						(-) 16,000	5,060	183,55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3,400,000	1,170,000	22,230,000	152,100	(+) 15,000	38,400	64,600
						(-) 18,000	5,400	204,600
고령자	22,230,000	1,111,000	21,119,000	144,490	(+) 14,000	36,230	62,820	
					(-) 17,000	5,230	194,070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함
- 최종 모집 호수(임주자·예비자)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해약 및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임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임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계층을 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21형, 26A형, 36A형의 “산단근로자”,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고령자”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청년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형의 주택에는 불박이장, 냉장고, 책상,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형태내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의 일반공급대상자는 각 형별로 통합하여 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정됨

※ 입주자자격완화 순위 내 경쟁시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자격완화 순위 (*상세조건은 3.신청자격의 공급계층별 요건 확인)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소득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소득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①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②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③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추첨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선정순서

입주자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비고



※ ① → ⑨의 순서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동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3-1. 산업단지 근로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일반공급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① 나주시 또는 연접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함평군, 화순군, 영암군, 장흥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아래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산업단지 근로자	1인	4,317,797 원 이하	120%	5,037,430 원 이하	140%	5,397,246 원 이하	150%
	2인	6,024,703 원 이하	110%	7,120,104 원 이하	130%	8,215,505 원 이하	
	3인	7,626,973 원 이하	100%	9,152,368 원 이하	120%	11,440,460 원 이하	
	4인	8,578,088 원 이하	100%	10,293,706 원 이하	120%	12,867,132 원 이하	
	5인	9,031,048 원 이하	100%	10,837,258 원 이하	120%	13,546,572 원 이하	
	6인	9,733,086 원 이하	100%	11,679,703 원 이하	120%	14,599,629 원 이하	
맞벌이	2인	7,120,104원 이하	130%	7,667,804 원 이하	140%	8,215,505원 이하	150%
	3인	9,152,368원 이하	120%	9,915,065 원 이하	130%	11,440,460원 이하	
	4인	10,293,706원 이하	120%	11,151,514 원 이하	130%	12,867,132원 이하	
	5인	10,837,258원 이하	120%	11,740,362 원 이하	130%	13,546,572원 이하	
	6인	11,679,703원 이하	120%	12,653,012 원 이하	130%	14,599,629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 맞벌이 842,446원(2순위 912,650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④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6세 이하 또는 자녀의 나이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취업기간을 합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완화 순위 →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 추첨 ※ 21형, 26A형, 36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3-2.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㉓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㉓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아래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317,797 원 이하	120%	5,037,430 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 원 이하	110%	7,120,104 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 원 이하	100%	9,152,368 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 원 이하	100%	10,293,706 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 원 이하	100%	10,837,258 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 원 이하	100%	11,679,703 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21형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3-3.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㉓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㉓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5.05.23 ~ 2006.05.22)
 ①-㉓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1순위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아래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 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 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 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 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 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 원 이하	150%
세대원(본인)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 ①-㉓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㉓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㉓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신청자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21, 26A, 36A형의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3-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㉒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㉑와 ③~⑤를 모두 갖춘 사람

- ①-㉓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만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중인 사람(**【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
- ①-㉒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㉑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120%(2순위), 150%(3순위)**)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7,120,104원 이하	130%	7,667,804원 이하	140%	8,215,505원 이하	150%
	3인	9,152,368원 이하	120%	9,915,065원 이하	130%	11,440,460원 이하	
	4인	10,293,706원 이하	120%	11,151,514원 이하	130%	12,867,132원 이하	
	5인	10,837,258원 이하	120%	11,740,362원 이하	130%	13,546,572원 이하	
	6인	11,679,703원 이하	120%	12,653,012원 이하	130%	14,599,629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 맞벌이 **842,446원(2순위 912,650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 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시 신청 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36A형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3-5.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1960.04.15 이전 출생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 원 이하	140%	5,397,246 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 원 이하	130%	8,215,505 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 원 이하	120%	11,440,460 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 원 이하	120%	12,867,132 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 원 이하	120%	13,546,572 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 원 이하	120%	14,599,629 원 이하	15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26A, 36A형의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고령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4. 공급일정

■ 공급일정

※ 일정 및 장소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공지사항』란에 게시합니다.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자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인터넷(PC)/모바일 접수 '25.06.02(화) 10:00 ~06.10(화) 15:30 * 현장접수 '25.06.05(목) (10:00~15:30) (점심시간 12시 ~13시 제외)	2025.06.12(목) 16: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등기우편제출 '2025.06.17(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사 (2~3개월 소요)	2025.09.25(목) 16: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ARS(1661-7700)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현장접수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5층 LH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주택계약실 [등기우편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5층 LH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담당자 앞					

- 청약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으로 접수하시길 권장 드리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신청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자격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여 적격자가 모집인원(예비입주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만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네이버인증서·금융인증서)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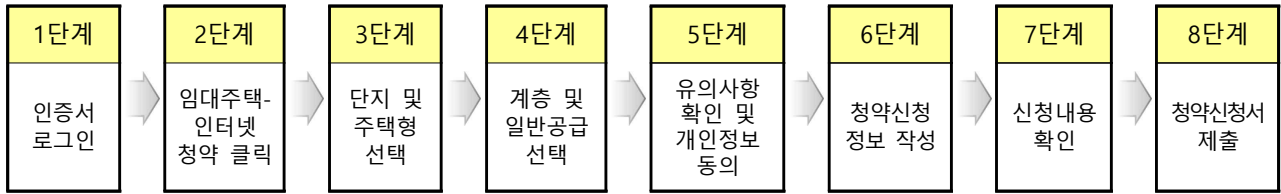
①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 금융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증서(공동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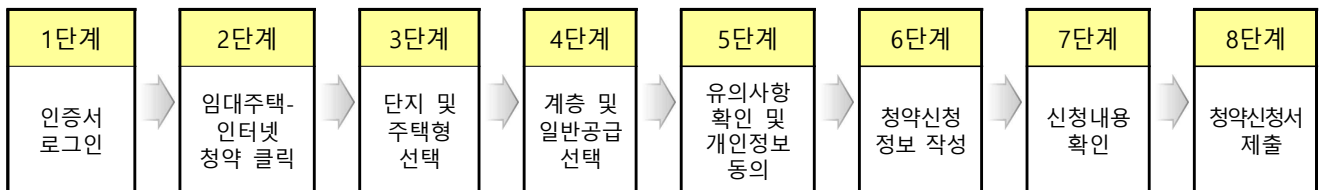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 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인증서·금융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청약 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계약내역 조회, 보증금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해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5.06.02(화) 10:00 ~ 2025.06.10(화) 16:00**이며,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함**입니다.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 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025.06.12.(목) 16시 이후**)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우편분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인터넷청약』 클릭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현장방문 신청방법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인터넷/모바일 신청일과 현장 신청일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공급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신청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등 청약관련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변경시 추후 별도안내)

-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5층 LH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주택계약실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05.2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비 고 (※서류제출시, 반드시 A4 사이즈 종이 1장당 확인서 1장으로 출력하여 작성 제출)	발급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첨부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본인세대에 속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첨부 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첨부 양식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발급)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 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발급)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 서류 추가제출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해당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출입국 관리사무소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산업단지 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1년 이상 근무(예정) 기간 소명 자료 추가제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추가제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직장

		· 혼인관계증명서(자녀수에 따른 거주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각서(첨부양식)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 년 계 층	청년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신 혼 부 부 계 층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 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학교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첨부양식 행정복지센터
신 혼 부 부 계 층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고령자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2025.09.25(목) 16: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당첨/낙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개별통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 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 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 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head> <tbody> <tr> <td>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계층</td><td>10년</td></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body> </table>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입주자격완화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갱신계약 사항이 적용될 수 있음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에는 이창동 주민센터, 영산포 우체국, 나주시립도서관, 나주보건소, 영산포 공용버스터미널, 영산포여자중학교, 전남미용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만봉천, 가야산, 나주하수처리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이창119안전센터, 하나로 마트, 영산포풍물시장, 영산포 제일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영산강, 영산강체육공원, 대흥빛물펌프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국도13호선, 국도23호선, 영산강 에코도로 등이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북측 영산강, 서측 만봉천 및 가야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북측 정면 1개소로서 출입도로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 출입구는 동측 1개소로서 출입도로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수산물 가공공장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악취, 해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보도, 가로등, 전주, 출입구, 울타리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녹지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출입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측 부지에 민간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으로 추후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2차원, 3차원), 각종 이미지컷 등의 이미지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시설물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 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외 시설물) 인접도로, 보도, 전주, 가로등 등
- (단지내 시설물)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MDF실, 방재실, 휴게소, 경로당, 경비실, 활력마당, 담소마당, 누리마당, 새순마당(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3개소, 우편함, 무인택배함, 음식물처리기 등
- 단지내 시설물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레벨, 층고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면적은 배분과정 상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 전용·공용면적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시공사 부도 등)로 인하여 공사 준공 및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옥탑에 공청안테나, 위성수신안테나가 설치되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됩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공용전기요금이 절감되거나, 절감금액 범위내에서 일부가 유지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CI(LH)등의 로고가 표시 될 예정이며, 아파트 명칭은 고유의 우리말 또는 지명이 사용

될 예정으로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에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경로당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용도, 구조,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상주차장으로 총101대 단지 내 배치예정으로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동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설치위치에 따라 일부세대에 소음 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층 내에는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옥외계단실, 환기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소음, 진동, 미관저해, 악취, 해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조경석 쌓기 포함)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 부대시설 등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설치 시 외부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면적 및 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원격검침은 3종 (전기, 수도, 도시가스)입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시스템이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쪽 강변도로와 101동이 맞닿아 있어 저층 및 인접세대는 소음,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 에어컨 및 실외기,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시어 이사 및 구매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 평형의 경우 발코니 폭이 협소할 수 있으므로 세탁기 및 건조기 준비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설치가가능여부 확인)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 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해 샘플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 세대 간 벽체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뒷면 및 하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마감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26㎡형, 36㎡, 44㎡형에 설치되며, 21㎡형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기타 일반사항 • 나주이창 행복주택은 LH와 나주시의 업무 협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나주시가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LH가 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를 수행합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법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01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남영 (주)동부토건	-	-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욕실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3급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주방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 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유의사항

- 해당단지는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발표	(ARS) 1661-7700 / 1600-1004 / 1670-0003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사무소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4층, LH광주동남권 주거복지지사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5. 2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확인 내용

신청인 본인은 내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강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할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우선·후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000년 00월 00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원	[임차인]	
		아니오 ☐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원	[수분양자]	
		아니오 ☐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원	[출자자]	
		아니오 ☐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원	[임대인]	
		아니오 ☐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원	[차주]	
		아니오 ☐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_____지구 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1) (대표신청인)

- [illegible]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illegible]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 신청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지구 행복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제공 동의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지구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지구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 년 이 후 이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_____지구 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세대 분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신청인 세대와 배우자 세대의 구성원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분
본인 (필수 기재)		-	(예시) 본인, 세대주	
배우자 (필수 기재)		-	(예시) 배우자, 세대원	동일세대 □ 분리세대 □
(예시)부		-		
		-		
		-		

20 ㄱ ㄴ ㄷ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각서인 : (인)

- 40 -

위 임 장 (해당자만)

□ 주택의 표시 : _____ 행복주택

위 표시 임대주택의 _____ 에 관하여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관련 업무의 일체를 위임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신청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수 임 자(대리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 붙 임 :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